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6.(생 략) 7. 환매조건부 매도 8.·9.(생 략) 10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(생 략)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6.(현행과 같음) 7. 환매조건부 매도 <u>및 매수</u> 8.·9.(현행과 같음) 10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(현행과 같음)
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 ①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(생 략) ④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	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 ①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,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,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 ③(현행과 같음) ④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<u>법시행령</u>으로 정하는 경
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~⑥(생략)	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~⑥(현행과 같음)
제38조(수익자총회) ①~④(생략) ⑤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⑦(생략) ⑧집합투자업자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	제38조(수익자총회) ①~④(현행과 같음) 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"간주의결권행사"라 한다)한 것으로 본다. 1.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.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.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(현행과 같음) ⑧집합투자업자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

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”으로 하고,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”로 한다.

제39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

-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신탁계약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”은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”으로 보고,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”은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”으로 본다.

제39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

-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1.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

<신 설> 1. <u>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</u> 2. <u>신탁업자의 변경(제43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</u> 3. <u>신탁계약기간의 변경</u> 4. <u>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. 다만,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,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 5. <u>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</u> 6. <u>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다만,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 7. <u>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</u> 8. <u>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</u> 9. <u>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 ②~⑤(생략)	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<u>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u> <삭 제> ②~⑤(현행과 같음)
제41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(생략) ②제1항에서 “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~8. (생략)	제41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에서 “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~8. (현행과 같음)

9. <u>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</u> 10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(생략)	<u><삭 제></u> 9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(현행과 같음)
제42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신탁계약 중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<u><신설></u> ②·③(생략)	제42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1. <u>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</u> 2. <u>신탁업자의 변경(제43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</u> 3. <u>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 4. <u>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. 다만,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,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 5. <u>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</u> 6. <u>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다만,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 7. <u>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</u> 8. <u>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</u> 9. <u>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 ②·③(현행과 같음)
제46조(투자신탁의 합병) ①(생략)	제46조(투자신탁의 합병) ①(현행과 같음)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	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<u>다만,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
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·②(생략) ③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되,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이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자투자신탁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<u>서면</u>으로 표시한 경우 2.(생략) ④~⑨(생략)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되,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이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자투자신탁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<u>서면, 전화·전신·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</u>으로 표시한 경우 2.(현행과 같음) ④~⑨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u>